



「(사)한국프로사진협회 - 파란소프트」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이하 ‘갑’이라 함)과 파란소프트 (이하 ‘을’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사진관들의 발전과 스튜디오의 스마트 사업화와 교육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업무상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내용

본 양해각서에 의한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갑’의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을’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함에 있어 함께 홍보 및 교육을 하기로 한다.
- ‘갑’과 ‘을’은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갑’의 회원들의 요청사항을 ‘을’의 소프트웨어에 반영하도록 한다.
- ‘갑’과 ‘을’은 사진업계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

제3조 분쟁해결

본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의무사항

- “갑”과 “을”은 제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5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5조 제반 업무 연락

본 협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 연락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는 인편 및 우편 그리고 팩스로 전달함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갑’과 ‘을’ 상호 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구체적인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조 법적 구속력

본 업무협약은 양사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10조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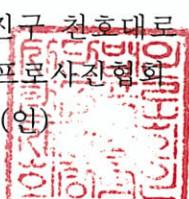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

본 양해각서는 2023년 5월 1일 2부를 작성, 날인되었으며, 이 모두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주 소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회사명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표자 : 권 용 옥(인)



주 소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908호

회사명 : 파란소프트

성 명 : 정 왕 재(인)

